

#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1707
----------	------

제출년월일 : 2008. 6.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사항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다(안 제5조).
- 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안 제6조제1항).
- 다.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포하여야 한다(안 제7조제1항).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 「시(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8. 5. 23. ~ 2008. 6. 2.(10일)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계획
- 관련 공문

#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안산시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내기업”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산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2.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매년 3월 15일까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 제4호에 따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
-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 제13조(자금 및 용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용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4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 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 제17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안 자	소관부서	지구환경과
	부서장 직위·성명	지구환경과장 정 내 관
	담당 직위·성명	환경정책담당 정 송 자
	담당자 직위·성명	안 준 식 481-2885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

## 2. 회계부서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계획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부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의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07
----------	------

제안년월일 : 2008. 7. 7.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분과위원회가 삭제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함.

## 2. 주요 골자

- 분과위원회가 삭제되어 관련 문구를 삭제함.(안 제5조)

#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안산시 환경보전 위원회에서 자문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자문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다.</p> <p>1. ~ 7. (생략)</p>	<p>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자문한다.</p> <p>1. ~ 7. (원안과 같음)</p>